

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. 6. 7 선고 2021가단127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D

변 론 종 결 2022. 5. 24.

판 결 선 고 2022. 6. 7.

주 문

1. 안동시 E 전 3,177㎡ 중 1/2 지분에 관하여,

가. 피고와 F 사이에 2018. 12. 5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F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. 12. 10. 접수 제367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F에 대한 채권

원고는 F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자로서, 2014. 11. 17. 대구지방법원 2014가소215377호로 'F는 원고에게 16,754,476원 및 그 중 16,276,906원에 대한 2014. 3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2015. 1. 17. 확정되었다.

나. F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

F는 2018. 12. 5. 자신이 소유하던 안동시 E 전 3,177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 중 1/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,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. 12. 10. 접수 제367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고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다. F의 재산 상태

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F는 합계 52,665,859원 상당의 적극재산(부동산)이 있는 반면, 원고에 대한 위 판결상 채무를 비롯하여 95,971,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안동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, 이 법원의 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,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장관,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(사해행위 취소)

가. 피보전채권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F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

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

1)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/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,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.

2) 피고는, 이 사건 토지 중 1/2 지분은 원래 'G' 종중의 소유로서 F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며, 이를 위 종중 소유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회장인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,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/2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이정현